

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- 성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(1단계)의 일환으로 건립된 창의 문화교류센터 내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
-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추가로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3. 주요내용

- 가. 성주체육관 사용료 수정 및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추가(별표 1)
- 나.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추가(별표 2)
- 다. 성주군에서 설치·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추가(별표 3)
- 라. 기타 용어 수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6조, 제8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5432(2022. 10. 25.)]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없음[가족지원과-45132(2022. 10. 24.)]
- 입법예고 : 2022. 10. 25. ~ 11. 14.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문화교류센터 내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추가, 사용료 감경대상 추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새로 개관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